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유지성 소유물건(2025타경504371)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호

감정평가서번호: JDI250123-2-002



위치 807호~

내용

날짜 2024.02.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정도 경인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성치 (인)

(주)감정평가법인 정도 경인지사 지사장 김병철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이억삼천이백만원정 (₩232,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호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17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유지성 (2025타경50437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등기사항전무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2.03	2025.01.31 ~ 2025.02.03	2025. 02. 04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232,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32,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김병철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 아이홈아파트, 제8층 807호)로서, 법원경매(인천지방법원 제출용)목적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대상물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2월 03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실지조사기간 : 2025년 01월 31일 ~ 2025년 02월 03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기준

대상물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방법

1) 평가방식은 대상물건의 성격·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이 있음.

2)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다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타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타 참고 사항

- 1)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거하였음.
- 2) 귀 원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가격을 배분하여 표시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조하시기 바람.
- 3) 대상물건 호수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시 현관문 호수표기 등을 확인하였고, 내부구조는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 폐문 및 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확장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면을 기준으로 일반적 상태로 평가하고 내부구조도를 도시하였는바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속한 전체건물의 개요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등]

구 분	내 용
명 칭	아이홈아파트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4-20, 204-25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42(부평동))
용 도 지 역	일반상업지역
구 조 및 규 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 지상: 14층
사용승인일자	2016년 02월 01일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기 타 설 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

※ 본 건물은 각 층별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이 속한 8층은 대장상 5~7호 라인인 오피스텔이며 1~4호 라인인 아파트임.

2. 대상 부동산의 현황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등]

기호	층	호	용 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지분 (㎡)	비고
1	8	807	오피스텔	71.67	24.1	95.77	11.4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 명칭	층/호	전유 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사용승인일	
#1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6/ 60*	84.8	13.52	223,000,000	2,629,717	2024.11.16	오피스텔 광대한면
								2016.02.01	
#2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9/ 90*	65.15	10.39	245,000,000	3,760,553	2024.08.27	아파트 광대한면
								2016.02.01	
#3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7/ 70*	68.13	10.86	230,000,000	3,375,899	2023.11.18	아파트 광대한면
								2016.02.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 명칭	층/호	전유 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사용승인일	
#4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9/ 90*	68.13	10.86	255,000,000	3,742,845	2023.03.07	아파트 광대한면
								2016.02.01	
#5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4/ 40*	69.48	11.08	238,000,000	3,425,446	2022.04.05	오피스텔 광대한면
								2016.02.01	
#6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14/ 140*	69.73	11.12	247,000,000	3,542,234	2022.04.12	오피스텔 광대한면
								2016.02.01	
#7	부평동 204-45	무한데뷰	8/ 80*	62.5	9.34	153,000,000	2,448,000	2024.08.17	오피스텔 광대소각
								2016.03.03	
#8	부평동 204-45	무한데뷰	4/ 40*	56.35	9.34	168,000,000	2,981,366	2023.10.17	오피스텔 광대소각
								2016.03.03	
#9	부평동 204-45	무한데뷰	11/ 110*	56.35	8.42	190,000,000	3,371,783	2023.06.20	오피스텔 광대소각
								2016.03.03	
#10	부평동 203-1	마루	9/ 90*	68.63	9.32	210,000,000	3,059,886	2024.09.06	오피스텔 광대소각
								2016.07.26	

※ 거래단가 = 거래금액 ÷ 전유면적

※ 사례<#2,#3,#4>는 동일 건물내 아파트 거래사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대상물건은 각층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최근 거래량은 아파트대비 오피스텔 사례는 적은편이나, 상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근지역 오피스텔 거래사례 중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상물건과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으며 동일건물내 거래사례로서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5>를 선정하였음.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칭	층/호	전유 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사용승인일	
#5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4/ 40*	69.48	11.08	238,000,000	3,425,446	2022.04.05	오피스텔 광대한면
								2016.02.01	

3. 사정보정

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사정보정치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중 대상물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인천광역시 를 활용하여 산정함.

[출처 : R-one(인천광역시)]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99.93	99.76	99.55	99.29	99.1	98.8	98.66	98.39	98.26	98.14	97.89	97.47
2023년	103.56	103.18	102.84	102.40	101.85	101.36	101.13	100.96	100.79	100.63	100.41	100.00
2022년	106.38	106.22	106.18	106.06	105.95	105.85	105.66	105.48	105.20	104.91	104.55	104.04
2021년	101.27	101.18	101.29	101.49	101.86	102.34	102.84	103.70	104.70	105.44	106.00	106.42

구분	적용 연월	가격지수	비고
사례 거래시점 (2022.04.05)	2022년 03월	106.18	B
기준시점 (2025.02.03)	2024년 12월	97.47	A
시점수정치		0.91797	A/B

※ 거래시점: 2022.04.05, 2022년03월 지수를 적용 함

※ 기준시점: 2025.02.03, 2024년12월 지수를 적용 함

5. 지역요인비교

대상물건은 비교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비교치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요인구분	세부항목(주거용)	대상물건 / 사례#5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대체로 유사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1.03	대상은 비교사례대비 향별효용은 열세하나, 층별효용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우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비교치 누계		1.03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산정

가. 감정평가 단가결정

기호	거래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가치형성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3,425,446	1.000	0.91797	1.000	1.030	3,238,790	3,240,000

※ 적용단가는 유효숫자 세자리 기준하였음.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

기호	층/호	전유면적 (㎡)	적용단가 (원/㎡)	산출가액 (원)	시산가액 (원)	비고
1	8/807	71.67	3,240,000	232,210,800	232,000,000	-

※ 시산가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8. 가격자료 및 합리성 검토

가. 평가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센터]

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 명칭	층/호	전유 면적 (㎡)	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원)	단가 (원/㎡)	기준시점	비고
								사용승인일	
ㄱ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7/ 70*	71.67	법원 경매	235,000,000	3,278,917	2024.09.03	오피스텔 광대한면
								2016.02.01	
ㄴ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2/ 20*	71.67	법원 경매	222,000,000	3,097,530	2023.06.13	오피스텔 광대한면
								2016.02.01	
ㄷ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14/ 140*	69.73	기타 담보	251,000,000	3,599,598	2022.03.11	오피스텔 광대한면
								2016.02.01	
ㄹ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4/ 40*	65.15	법원 경매	246,000,000	3,775,902	2024.05.10	아파트 광대한면
								2016.02.01	
ㅁ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 아파트	2/ 20*	69.48	법원 경매	200,000,000	2,878,526	2023.09.07	오피스텔 광대한면
								2016.02.01	
ㅎ	부평동 204-45	무한 데뷰	6/ 60*	64.5	법원 경매	204,000,000	3,162,791	2024.12.20	오피스텔 광대소각
								2016.03.03	
ㅏ	부평동 204-45	무한 데뷰	14/ 140*	56.35	법원 경매	188,000,000	3,336,291	2024.03.07	오피스텔 광대소각
								2016.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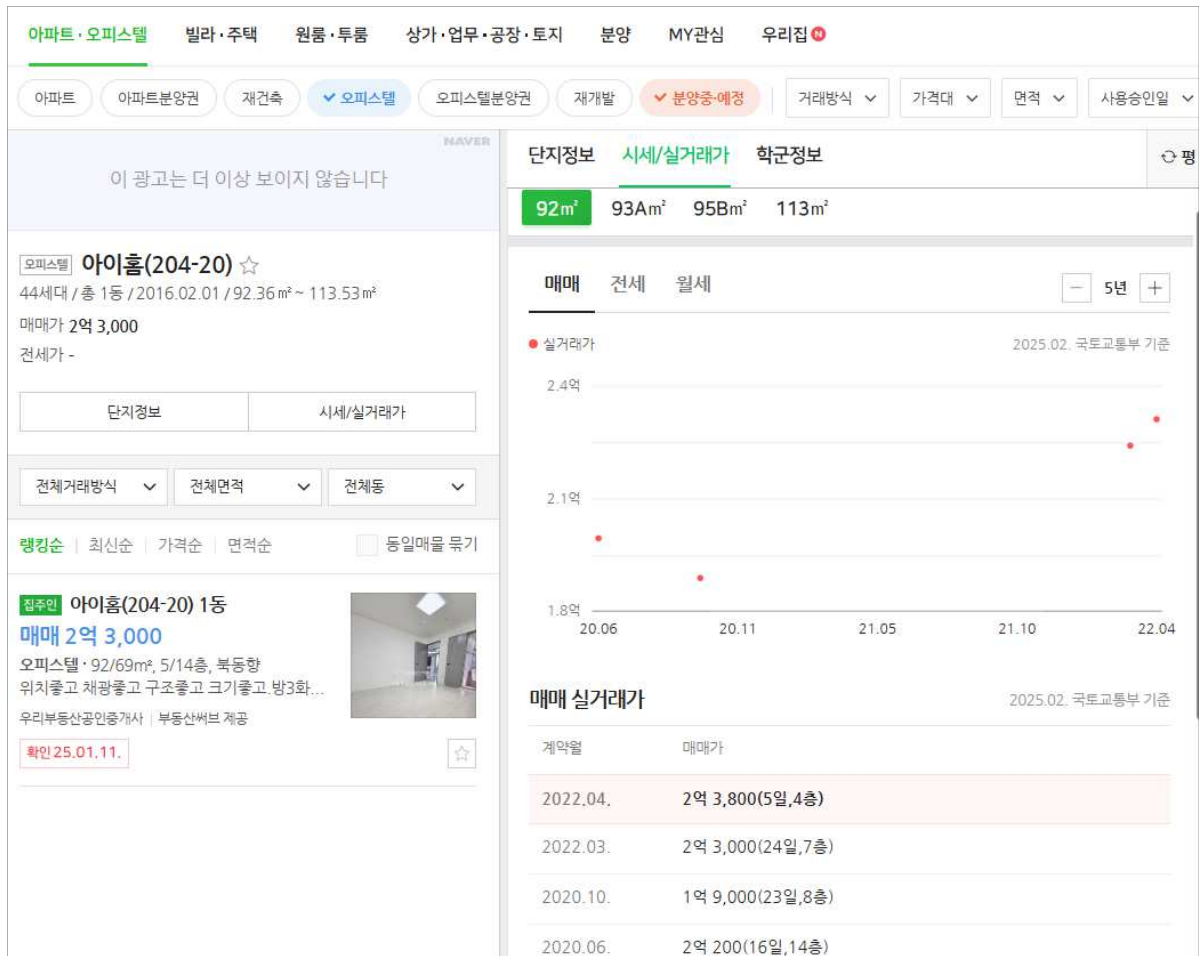
※ 사례<ㄹ>은 아파트 사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부동산중개사이트 상 대상건물내 ‘오피스텔’ 유사면적 매물(호가) 시세자료

대상 기호<1>(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은 각층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이트상 유사면적 <오피스텔> 매물(호가)추세는 아래와 같음.

[출처 :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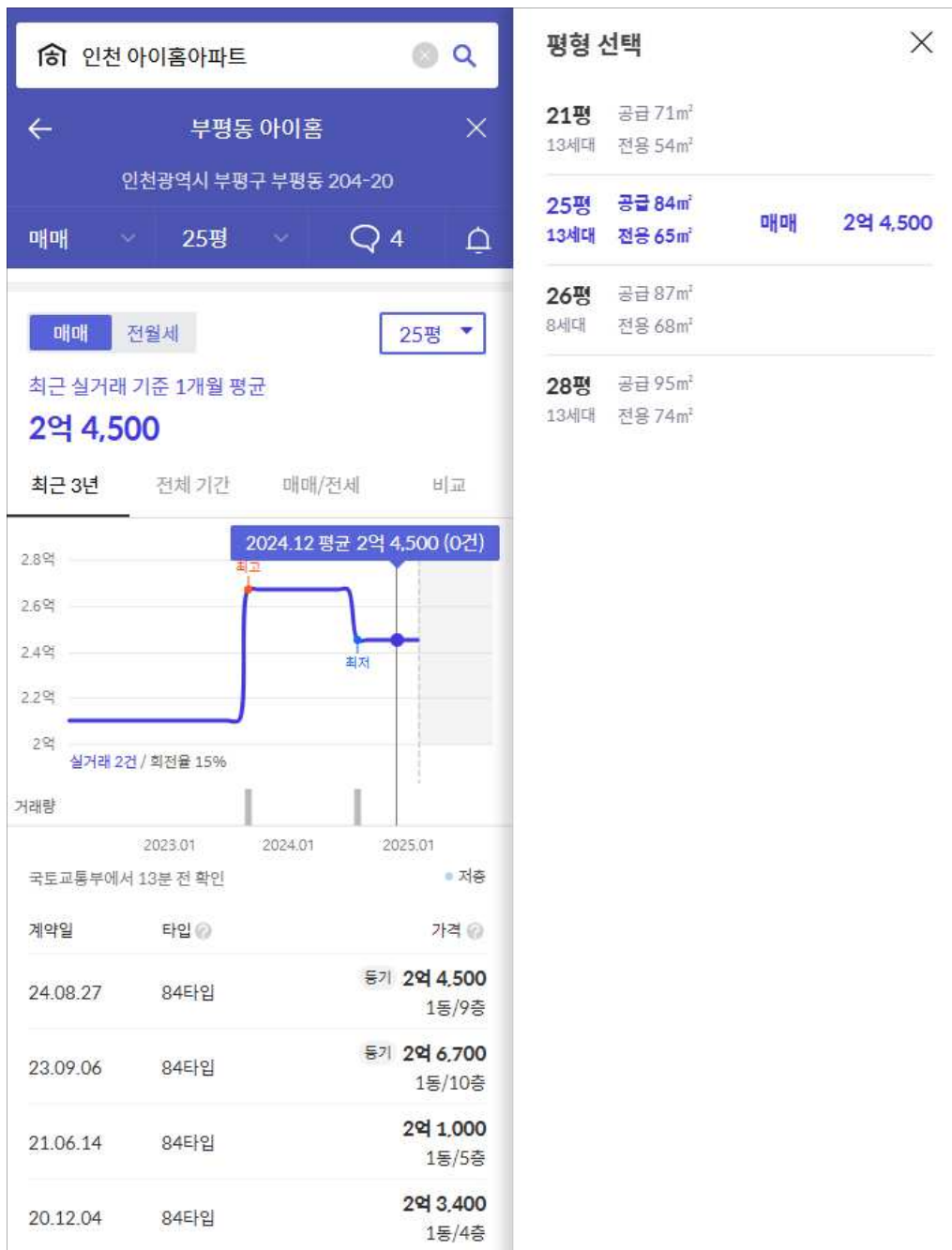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부동산중개사이트 상 대상건물내 ‘APT’ 유사면적 가격시세자료

대상 기호<1>(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은 각층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이트상 유사면적 <아파트> 매매추세는 아래와 같음.

[출처 : 호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탐문조사 결과, 대상물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수준은 아래와 같이 파악됨.

[출처 :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구분	가 격 수 준
대상 인근 오피스텔	최근 유사 전유면적 약 71.67㎡ 기준으로 가격수준은 약 2.1억원 ~ 2.3억원 내외 수준으로 파악되나, 사용승인일, 접면도로, 동별전면도로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호황 국면이 둔화됨에 따라 수요 감소로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등 시세 변동이 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마. 경매통계자료

[출처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소재지	통계기간	물건구분	매각율(%)	매각가율(%)
인천광역시 부평구	최근1년 (2024.01~2025.01)	아파트	33	81.6
		단독/다가구	20	75.7
		대지,임야,전답	25	42.6
		연립주택, 다세대	26	66.2
		오피스텔	30.8	75.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권면적 (㎡)	결정가격 (원)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4-20 외 (아이홈아파트) 8층 807호	71.67	24.1	95.77	11.43	232,000,000
합 계						232,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구분건물로서, 인근 유사건물의 거래사례, 인근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 제8층 제8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2.01)

외벽 : 설재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광대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토지 2필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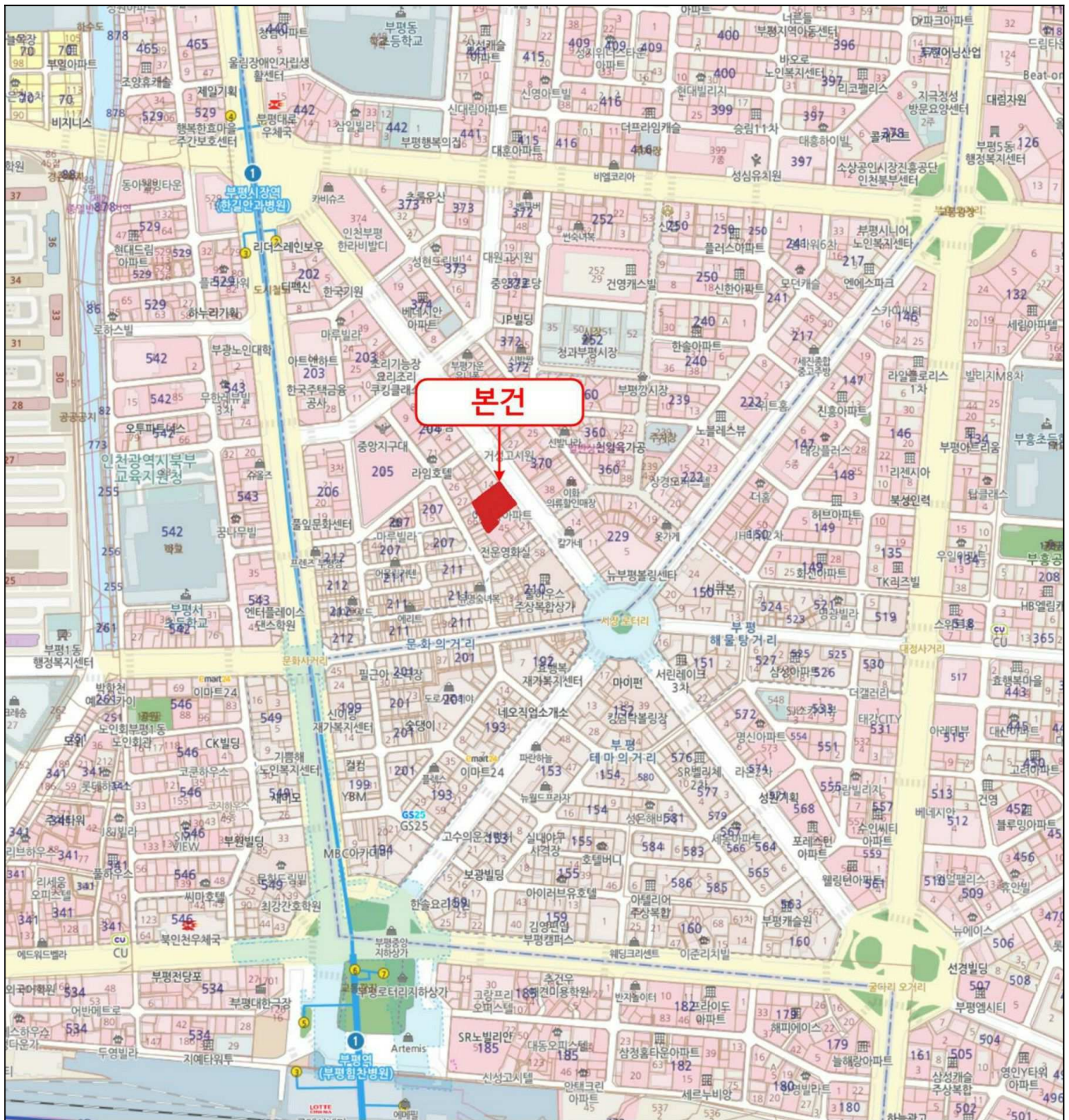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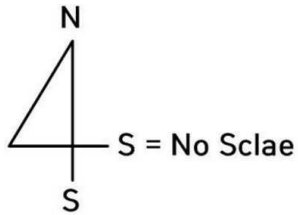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4-20 외 1필지 아이홈아파트 제8층 제8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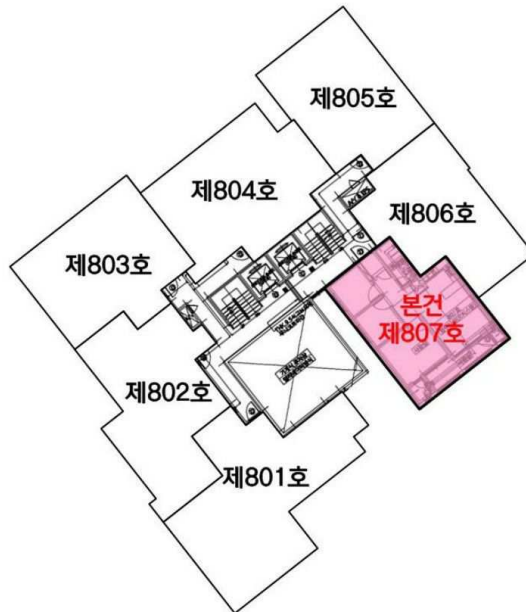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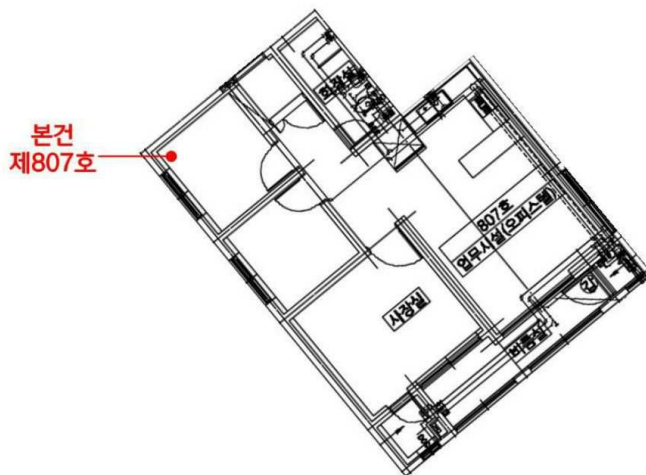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4-20 외 1필지 아이홈아파트 제8층 제8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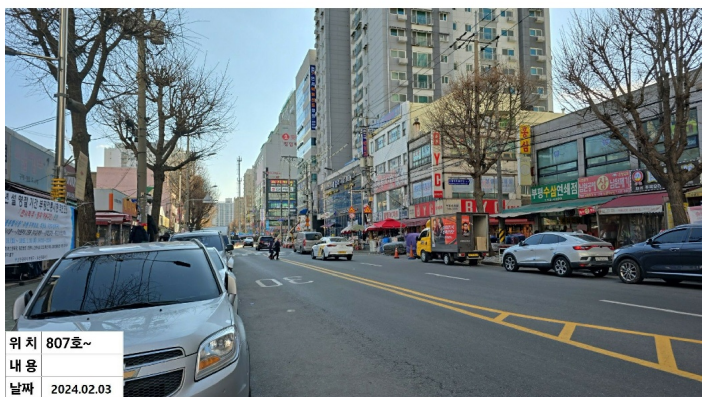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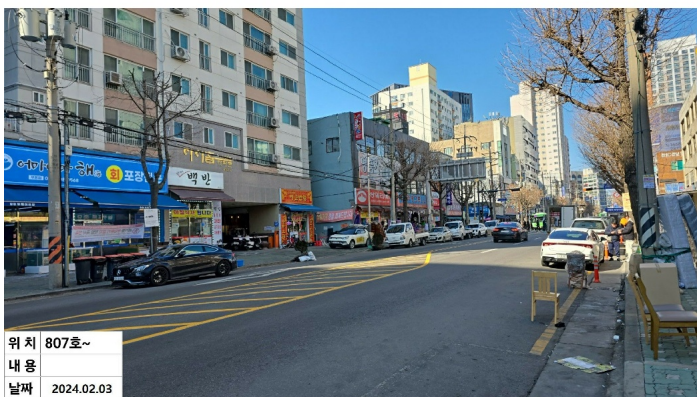
< 호별배치도 >



< 내부구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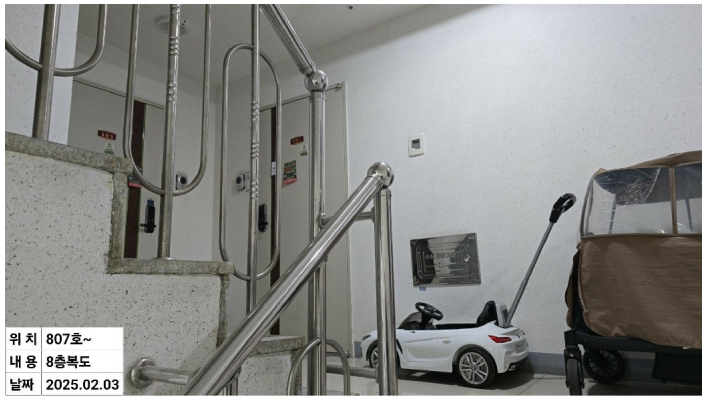


본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4-20 외 1필지
아이홈아파트 제8층 제8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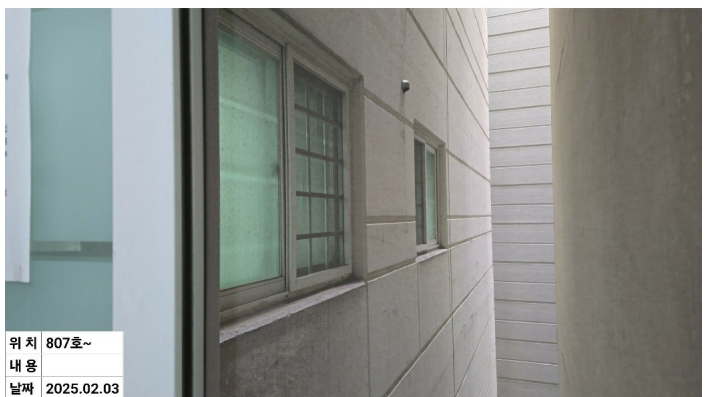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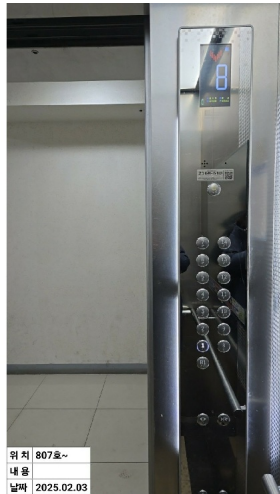
<1>



<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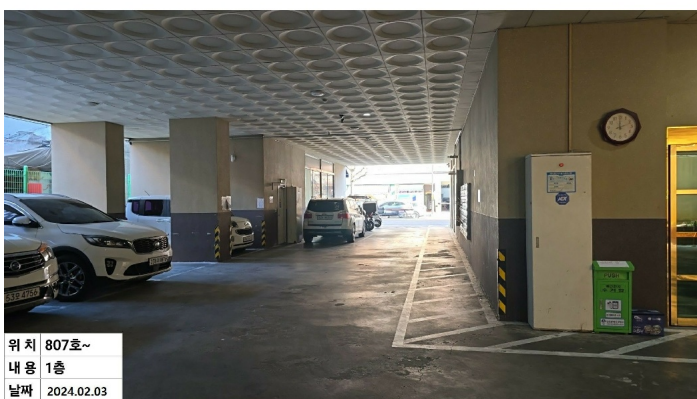
<1>



E/V



1



1



1

()